

2017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부과·징수 공고

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(제10566호)」 제46조제3항,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'2017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적립목표액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분담금 부담액 부과·징수'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11. 2.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

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개

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·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및 조정, 손해배상금 대불,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※ 설치근거 :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요

-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와 의료인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,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.

3

근거 법령

-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6조
-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4조

4

2017년도 보상재원 분담금 적립목표액 및 납부 대상자

- 적립 목표액 : 309백만원(국가 217백만원, 보건의료개설자 92백만원)
- 납부 대상자 : 581명
 -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기준으로 2016.1.1. ~ 12.31.까지 분만 실적이 있고, 부과기준일 현재 운영 중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

적립목표액 및 납부대상자			
계	국가(70%)	분만의료기관(30%)	납부대상자
309,590천원	216,713천원	92,877천원	581명

5

2017년도 의료기관 분담금 산정기준

□ 산정기준

- 기준 : 납부대상 각 의료기관의 2016년 분만건수에 분만단가(234.39원)를 곱하여 산정
- 산식

$$\text{개별 부과금액} = \text{'16년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분만건수} \times 234.39\text{원}$$

6

2017년도 의료기관 개별 분담금 조회 및 납부방법

□ 개별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확인 방법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

「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」(상단) 선택 →

「개별분담금 조회」(좌측) 선택 →

요양기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

분담금 조회를 위해서는 요양기관번호, 대표자명을 이용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



□ 납부 방법 및 시기

○ 납부 방법 : 가상계좌 납부(분담금 납부고지서는 '17.11월 중 발송 예정)

※ 일시납 원칙(단, 분담금이 1백만 원 이상 인 경우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)

○ 납부 시기 : 2017. 12. 2. ~ 12. 31.

7

재원의 관리·운영

□ 의료중재원의 예산과 별도 관리·운영(시행령 제21조제4항)

8

기타 사항

○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이란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동의 운영재원입니다.

○ 운영재원은 국가가 70%, 분만의료기관이 30% 분담하여 마련하게 되며,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청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될 경우 최대 3,000만원 범위 내의 보상금으로 사용됩니다.

※ 개별분담금을 납부한 의료기관은 보상금 지급 시 별도 납부하는 금액은 없으며, 매년 적립목표액 산정에 따른 개별분담금만을 납부하게 됩니다.

9

문의처

○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고객센터(☎ 1670-2545) 또는 이메일(kmedi@k-medi.or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